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388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388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7702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2가소4395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권가혜

피고, 상고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민지예

판결선고 2024. 7. 11.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77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